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법정배분 대상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추가〉
■ 전진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124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참고사항	1
IV. 검토의견	2
1. 복권수익금 법정배분 대상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추가 (안 제23조)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전진숙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4. 12. 31.

다. 회 부 일 : 2025. 1.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또는 중증질환 치료제는 환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이 매우 비싸서 건강보험급여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복권수익금의 일부를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복권수익금을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또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2호 신설).

III.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복권수익금 법정배분 대상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추가 (안 제23조)

현행	개정안
○ 복권수익금 법정배분사업 -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지방자치단체 등 10개 기관·기금 - <신설>	○ 복권수익금 법정배분사업 - (현행과 같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현행법은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의 기관·기금 등에 배분¹⁾하도록 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저소득·소외계층 복지사업 등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3.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4. 삭제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7. 지방자치단체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복권기금 지원사업비의 배분 및 용도]

(단위: 억원)

구분	2025년도 계획액	용도
법정배분사업	11,051	·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 ·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출 · 근로복지진흥기금 전출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전출 · 국가유산보호기금 전출 · 지방자치단체 지원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지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지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지원
공익사업	21,199	·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 · 국가유공자 복지사업 · 소외계층 복지사업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 문화·예술 진흥사업

※ 자료: 기획재정부

개정안은 복권수익금의 법정배분 대상에 「국민건강기본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추가하여 복권수익금을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은 재원을 다음의 사업에 사용함
 -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복권수익금 법정배분 대상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추가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재원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 보임.

첫째,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중증질환자의 경우 진료비 부담이 크나 현재 이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진료비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²⁾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산정특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질병코드가 없거나 질병명 및 진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산정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경감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³⁾. 또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는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중증질환자 모두 비급여항목에 대하여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외에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⁴⁾에 따른 의료비 지원을 받을

2)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①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요양급여에 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②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당사자에게 그 초과 금액을 통보하고,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1.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2. 제49조제1항에 따른 요양이나 출산의 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요양이나 출산의 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에서 같은 항에 따라 요양비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③ 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액 및 합계액의 산정 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 별표 2와 같다.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희귀질환 건강보험 보장확대 방안 연구」, 2016.12.

헬스경향, “희귀난치질환자, 고가 치료비에 두 번 운다”(2024.12.27.) 등

수 있으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고 이 경우에도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한계가 있음.

둘째, 복권수익금 법정배분 대상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추가할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므로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임.

복권판매액 증가로 복권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정배분기관·기금에 배분되는 금액도 점차 증가하여 2025년 계획 기준 1조 1,051억원임.

-
- 4)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의료비 지원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희귀질환의 예방, 진단 및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료비 지원 사업) ① 법 제12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 사업(이하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자료조사
 2.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3. 의료비 지원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
 4. 의료비 지원과 관련된 홍보
 5. 의료비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득과 재산 등이 질병관리청장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희귀질환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중 희귀질환자

[2020년 ~ 2025년 복권기금 운용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규모	65,350	71,941	76,412	78,729	84,354	88,685
법정배분	7,292	8,103	9,551	10,338	10,402	11,051
공익사업지원	15,263	17,972	19,949	20,109	20,801	21,199
여유자금운용	4,030	4,582	963	1,696	2,074	1,554
기타	38,765	41,284	45,949	46,586	51,077	54,881

주: 2020년~2024년은 결산 기준, 2025년은 계획 기준임.

자료: 기획재정부

다만, 복권수익금 법정배분 대상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법정배분비율이 기관별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복권기금이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법정배분제도는 2004년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복권법’이라 함)」 제정에 따라 기존 복권발행기관의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자체수입이 「복권법」 제정 당시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여 복권수익금 지원 없이 자체 사업 운용이 가능한 기관에도 복권수익금이 배분되거나⁵⁾,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추가 사업 수요가 있음에도 기관별 배분비율을 초과한 지원이 이뤄질 수 없음에 따라 제한된 규모로 지원된 경우가 발생하는 등 현행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관별 정률 배분체계는 탄력적인 재정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취약계층 보호 등 복지 분야에서 국가재정 지원의 수요가 급

5) 감사원, 중장기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2021. 5.

증하고 있는 반면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재정 여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복권수익금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배분·집행은 취약계층 등 국민의 복지증진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의 운용 측면에서도 중요할 것임.

이와 같이 복권수익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법정배분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법정배분기관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⁶⁾

둘째, 법정배분비율이 복권수익금의 35%로 고정되어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법정배분기관으로 추가하는 경우 복권수익금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존 기관·기금 등에 대한 배분액이 감소하게 되므로 기존 수혜기관 등의 반발이 제기될 우려가 있으며, 복권수익금을 지원 받아 진행하고 있던 사업의 중단·축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추가적으로, 「복권법」 제23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은 기금 등은 이를 별표에 규정된 용도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⁷⁾ 법정배분 대상 추가 시 별표에 용도를 규정하여야 하

6) 기획재정부도 법정배분기관을 추가하는 것은 당초 법정배분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감사원 등에서 재정부운용의 칸막이화에 따른 경직성·비효율성 등을 해소하기 위해 법정배분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현재 전국민 의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대규모 재정 지원(일반회계·건강증진기금, '25년 12.6조) 중이며, 특히,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급여는 연간 2조원 수준으로 복권기금의 가용재원을 감안하면 유의미한 지원이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② 제1항에 따라 복권수익금을 배

나, 개정안에는 용도가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한편,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71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분받은 기금 등은 이를 별표에 규정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 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 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 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 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 ----- ----- -----. ----- ----- ----- ----- ----- -----.
1. ~ 11. (생략) <u><신설></u>	1. ~ 11. (현행과 같음) <u>1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 민건강보험공단</u>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문 의 처

02)6788-5153

참고 1

현행 법정배분기관 현황

법정배분기관	배분비율 (35% 기준)	용도
1. 과학기술진흥기금	12.583% (4.404%)	▪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학술활동과 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 등 ▪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등
2. 국민체육진흥기금	10.371% (3.630%)	▪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 국민체육시설 확충 ▪ 학교 운동경기부 육성 ▪ 생활체육 보급 및 진흥 ▪ 국내외 체육대회 및 행사 지원
3. 근로복지진흥기금	5.310% (1.859%)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용자 등
4.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6.356% (2.225%)	▪ 중소기업 창업지원 ▪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 지방중소기업 육성 ▪ 산업기반 조성
5. 국가유산보호기금	14.286% (5.000%)	▪ 문화재 보존을 위한 예방적 관리 등
6. 지방자치단체	17.267% (6.043%)	▪ 지자체 문화·예술·복지 ▪ 지역개발사업 ▪ 그 밖에 공익목적 사업
7.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 업특별회계	17.267% (6.043%)	▪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 등
8. 사회복지공동모금회	4.286% (1.500%)	▪ 사회복지사업
9.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5.846% (2.046%)	▪ 수목원, 휴양림, 수목장림 조성, 산림복지진흥 사업 등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6.428% (2.250%)	▪ 국가유공자 진료, 건강관리, 보호, 복지시설 운영 등
계	100% (35%)	

참고 2**건강보험 재정 지원 사업****①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일반회계)**

'24년	'25년	증감(B-A)	%
10조 2,636억	10조 6,211억	3,575억	3.6

□ 사업개요

- 건강보험 가입자의 급여비용 및 취약계층 보험료 경감 등을 지원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도모하고 전국민 의료 보장

□ '25년 주요 내역

- '25년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2.1% : 106,211억원

* 보험료 예상수입액 : ('24년) 846,022억원 → ('25년) 875,646억원

② 건강보험가입자 지원(건강증진기금)

'24년	'25년	증감(B-A)	%
1조 9,022억	1조 9,882억	860억	4.5

□ 사업개요

- 건강보험 가입자의 급여비와 건강증진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안정 및 전 국민 의료이용 보장 도모

□ '25년 주요 내역

- '25년도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의 65% : 19,882억원

